

참여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25. 7. 8.

새 정부에 다시 제출하는
‘2025년 세법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서

목차

목차	2
2023~2024년 세법 개정의 문제점	3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감세의 결정판	3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4
부자 감세로 인한 지출 축소, 민생 경제 악화시켜	4
세법 개편 방향	5
1. 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및 국민부담률 OECD 수준으로 제고	5
2.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5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
세부 개정안	7
1.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을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7
2.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8
1) 후퇴한 보유세 정상화	8
2)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8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9
3.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9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10

이재명 정부의 과제,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의 문제점

복지 확대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기조와 결별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번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는 것으로,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담아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음.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감세의 결정판

- 2022년부터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자산계층의 세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며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지속해왔음. 전 세계적으로 실증되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감세 논리로 내세우며 부자감세를 실시한 결과,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 첫째, 법인세와 상속세를 완화함. 2022년 6월, 정부는 법인세 세율 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려 했지만 국회를 통해 법인세 세율 구간이 전 구간 1%p씩 인하됨. 또한, 대기업에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명목으로 최대 25% 세액공제, R&D 투자에는 최대 35% 세액공제 특혜를 부여함.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매출액 0.4조원→1조원 미만, (확정) 0.5조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1,200억원, (확정)600억원)도 대폭 확대됨. 이는 2023년 중견기업 기업상속공제액이 2022년 대비 600%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둘째,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함. 윤 정부는 다주택자 종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0.6~6.0%→0.5~2.7%),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6억원→9억원), 3년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기준으로 동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60%) 등을 통해 고가주택·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조세 정책을 실시함. 2023년 종합부동산세 종과 대상은 99.5%(483,454명→2,597명), 2.2조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지역·유형별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의 격차를 더 벌리고,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음.
-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대주주 보유액 10억원→100억원)를 추진함. 이전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왔음. 이로 인해 약 1.4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3조원¹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작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약 0.9%(6만 7천명)의 금융 자산가들에게 감세 특혜가 돌아간 반면, 매년 1조 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됨.

¹ 국회 예산정책처

- 이처럼 윤 정부는 3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5년 동안 97.3조원(누적법 기준)²에 달하는 감세 방안을 발표함. 감세안을 살펴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34.6조원)가 서민·중산층(16.8조원)보다 2배 이상 많고, 감세 혜택은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됨.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는 윤 정부 조세 정책의 부자 감세 기조를 극명하게 보여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했음. 국세 수입은 2022년 395.9조원에서 2024년 336.5조원으로 59.4조원(15%p)이 급감했고,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 IMF 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경기 둔화, 2020년 코로나 위기, 4차례에 불과했음. IMF 경제위기 이후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데도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감세 기조를 밀어붙인 데 있음.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2년 대비 '23년 국민부담률 하락률이 칠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부자 감세로 인한 지출 축소, 민생 경제 악화시켜

- 윤정부의 부자 감세는 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축소시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함.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경제 위축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 포인트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2024년 소매판매액지수가 -2.2%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하락하며 최장 감소세가 지속됨.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불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으로 대응함. 2024년의 한국은행 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 원으로, 2023년(162조 원) 대비 37.5% 급증했으며,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지방재정도 타격을 입었음. 국세와 연동되는 2023년 지방교부세·교부금 18.6조 원이 미지급됐고, 2024년에는 6.5조 원이 감액·불용 처리되어, 지역 기반의 민생·복지 사업이 축소되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됨.
- 경제적 양극화도 극심한 수준으로 심화됨. 2024년 상위 10%(연소득 평균 2.1억 원)와 하위 10%(1,019만 원)의 연평균 소득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고,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짐.³

² 국회 예산정책처

³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법 개편 방향

1.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및 국민부담률 OECD 수준으로 제고

- 국가예산정책처는 2024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25~2029년 동안 3,090억원(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빠져있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초유의 계엄·내란 사태가 더해져 가뜩이나 위태롭던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로 하향 조정됨.
-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어디에도 세수를 확대해 적극 재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음.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1년 연장), 지방주택 구입시 증부세 특례 적용(1세대 1주택) 기준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를 통해 건설·지역 경기 회복을 꾀 하겠다고 함.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지원 대책에도 살아나지 않은 지방의 건설·부동산 경기가 추가 감세 정책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임.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1%로 44개 주요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2024년말 가계부채는 2,300조에 육박함.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는 해당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켜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자산 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정책 철회,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부의 대물림을 완화할 상속세 강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추진임. 우선 부자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부담률(2023년 26.9%)을 OECD 수준(33.9%)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2.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과세 범위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소득세법은 과세 소득을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소득 개념(포괄적 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과세하는 법인세법과 대조됨. 소득세법이 법인세법처럼 포괄적 소득개념에 가깝게 과세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전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임. 이후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공평 과세를 조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또한 조세 중립성의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과세 소득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법해석과 적용에 혼선과 조세쟁송이 발생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납세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조세저항 등을 낳게 됨. 새로운 소득을 법에 규정하는 방식은 세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공평과세와 과세 중립성, 열거주의 방식이 낳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세법의 소득개념을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임.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의 요소를 도입할 때 단기적으로는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포괄주의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2002년 100조원을 넘은 국세 수입 실적은 2012년 20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약 400조원에 달함.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세 수입은 국가 운영의 절대적인 수입원이 되었음. 향후 국가 운영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수급할 수 있는 공정과세 정책 확립과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납세자 권리기본법(안) 제정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국세기본법 등에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과 지방세법에도 납세자 권리 관련 규정이 있음. 이렇게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세자 권리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행 법률상 미비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권리 보장을 한층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상설 입법 전(前) 조사위원회 설치 필요함. 국회의 조세 관련 입법절차 과정에서 조세법 제정 및 개정이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사항의 정합성 심사를 위해 국회에 ‘상설 입법 전(前)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장이 필요함. 납세자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기본법(안)’에 세무 조사의 방침 설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권리로 납세자의 세무조사나 면담을 기록할 권리, 조세 행정당국에 대한 녹음 청구권과 녹취록 사본의 교부 청구권, 세무조사관과 조사결과를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조사결과의 문서화, 서면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통신 비밀이나 의뢰인과 관련된 3자와의 정보나 변호 기록 등의 비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세무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형사상 및 민사상 납세자의 책임 추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부 개정안

1.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최고세율 상향

● 현황

- 기획재정부의 2024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예산 대비 30.8조원이 덜 걸림. 그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9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이 증가함.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등으로 법인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각 구간별 1%p 인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음.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범위 및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렇듯 계속되는 부자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수요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우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함.

● 개선안

- 법인세 과세 구간 2단계로 단순화, 최고세율 상향
 - 법인세는 과세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 2단계로 변경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로 조정하고,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함.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표1]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 및 정상화

■ 법인세			
과세표준	현행	개편안	세율 차이
2억 원 이하	9%	10%	1%p
2억 원~200억 원 이하	19%	25%	6%p
200억 원~3,000억 원 이하	21%		4%p
3,000억 원 초과	24%		1%p

2.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후퇴한 보유세 정상화

● 현황

- 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시 적용받도록 변경하고, 세율 인하(0.6~6.0%, 0.5~5.0%)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 종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⁴ 합산 배제 등으로 종부세를 무력화함.
- 그 결과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종부세(주택, 토지) 과세 인원은 2022년 131만명에서 2024년 55만명으로 76만명이 감소했고, 종부세액은 2022년 7.5조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2.5조원이 줄어듦.
- OECD 등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특히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유달리 높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함.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새 정부가 후퇴한 보유세 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를 통한 투기 억제에 나설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정책이 필수적임.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후퇴한 보유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보유세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개선안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대상 축소
 -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으로 인하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윤석열 정부가 인소한 세율을 2021년 수준으로 인상(0.5~5.0% 0.6~6.0% → 0.6~6.0%) 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윤석열 정부가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도 95% 수준으로 되돌려야 함.

2)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 현황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함.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야 보유세 등을 형평성 있게 과세할 수 있음.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국토부 발표, 2020년 수준 동결한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과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함.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3년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음.

-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주택 실거래가는 2022년 평균 2.9억원에서 4억원으로 36.9% 인상되었으나 공시가격은 2.7억원에서 2.8억원으로 1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보유세는 618만원에서 413만원으로 낮아졌음.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시세 반영률이 낮으며,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이 더욱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관련 내용을 제외하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 그러나 새 정부는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수직적 불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함.

● 개선안

- 국토교통부가 임의로 적용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기
- 공시가격의 지역·유형·가격대 간 형평성 제고
 -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현 수준에서 한 번에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함
 -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존의 건물시가표준액을 활용하되, 신축단가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경우 세율을 조정하도록 해야 함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 현황

-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세율이 낮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있음.
- 분리과세를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작아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개선안

- 분리 과세 적용 구간 하향 조정 및 범위 축소
 -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000만 원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함.
- 임대주택 경비 인정 비율 축소 및 기본공제 폐지
 - 현행 60%(등록임대주택) 또는 50%(미등록임대주택)인 필요 경비액 인정 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 원(등록임대주택) 또는 200만원(미등록임대주택)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해야 함.

3.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 **현황**

-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함.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이자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일괄공제 수준이 5억 원에 달하고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는 문제가 있음.
-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2억원, 5억원,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이면서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음.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3조원의 53.6%(6.6조원)가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초부자감세임.
- OECD 보고서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회 평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선안**

- 상속세 공제 축소
 - 일괄공제 수준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인하해야 함.
-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 **현황**

-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5.4%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2% 감소함.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0.75명이라는 유례없는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양극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사회 안전망은 빈약한 수준임. 2022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4.8%로 OECD 최하위권에 있음. 따라서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우리 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할 긴급한 과제임. 그런데 이와 같은 복지 수준의 대폭적인 개선을 달성함에 있어 관건은 그에 걸맞는 자원 마련 방안임.
- 한편 ‘2018-2060년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제도 개선이 없어도 인구구조의 변화로 향후 의무복지 지출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복지 수준의 대폭적인 제고 뿐 아니라 의무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증세를 해야 할 때임. 그러나 일반적인 증세 방안은 복지 확대의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인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세로서 ‘복지세’ 도입을 제안함.

- 개선안

- 복지세 도입

- 현행 세제에 부가하는 세제(surtax)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하여야 함.
- '복지세'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 확대에 사용하여야 함.

[표2] 복지세 과세표준과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100분의 10
2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100분의 1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100분의 10
4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10

참여연대 정책자료
새 정부에 다시 제출하는 '2025 세법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서

발행일 2025. 07. 08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신승근 교수)
담당 박효주 팀장 02-723-5052 tax@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